

2018학년도 학교폭력예방 계획서

삼계초등학교

I. 학교폭력예방교육

1. 추진목적

- 가. 학교폭력이 없는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증진
- 나. 타인존중과 배려하는 문화 형성을 통한 전인교육 실시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2. 추진방침

- 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로 2회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회적인 행사 중심의 교육보다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중심의 예방 교육 실시한다.
- 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교육과정설명회 및 학부모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라. 강의 중심의 수업보다 학생들의 활발한 상호작용활동과 체험 중심의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극대화 한다.
- 마. 다양한 수업활동(외부강사 초청수업,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한 수업,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 몰입도를 증진한다.

3. 세부 추진내용

가. 임실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초청 수업

- 1) 교육일시 : 1학기(3.19, 7.2, 2~3교시) 2학기(9.10, 12.3 2~3교시)
- 2) 교육대상 : 1~6학년 전교생 33명
- 3) 교육강사 : 임실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나. 친구사랑 주간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1) 일시 : 1학기-3.26~3.30. 2학기-8.27~8.31.
- 2) 대상 : 1~6학년 전교생 33명
- 3) 내용 : 인권교육, 사랑의 쪽지 전달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형성

다.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1) 일시 : 행복자치 학생 다모임 실시일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2019 1월
일 시	19일(월) 1교시	16(월) 1교시	21(월) 1교시	18(월) 1교시	23(월) 1교시	10(월) 1교시	22(월) 1교시	26(월) 1교시	30(월) 1교시

2) 대상 : 1~6학년 전교생 33명

3) 내용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율 규칙제정 및 월별 자율 모니터링 발표, 고운연행 우수아 칭찬합시다, 학교폭력예방 다짐 및 생각나눔회 등

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책임상담제 운영

1) 일시 : 연중 수시

2) 대상 : 1~6학년 전교생 33명

3) 내용 : 각 반 담임교사가 각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지도 및 상담활동 실시

II.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가. 근거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나. 위원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의 자격

- 위원 자격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
- 해당 학교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등)

라. 위원의 위촉 :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한다.

마.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교감이나 학부모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바.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부서직위	성명	위촉사항	부서직위	성명	위촉사항
교 감	이현경	위원장	학부모	선출예정	
학생생활 담당교사	김대희	간사	학부모	선출예정	
학부모	선출예정	위원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배정호	위원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및 운영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 분기별 1회 의무 개최(학교폭력이 없을 경우에도 분기별 1회 반드시 개최)
-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 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 자치위원회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비공개 회의)
- 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소관 업무 공무원 제외)
- 자치위원회 회의록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복사 또는 열람 등)
 - 공개범위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당사자 진술 및 심의 의결 사항 등
 - ※사안 진술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당사자 본인이 쓴 진술서는 공개 가능)
- 자치위원회 회의록 검토 위원 2명을 선정하여 회의록 서명 날인한다.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가.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가. 근거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학생생활 담당교사** 이상 2명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

- 1) 학교폭력 피·가해사실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학교폭력 확인서, 면담, 설문조사 등)
- 2)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후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 협의록 작성
- 3)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보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사안종결 처리 불가)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전담기구) 자체해결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종결]

5. 비밀누설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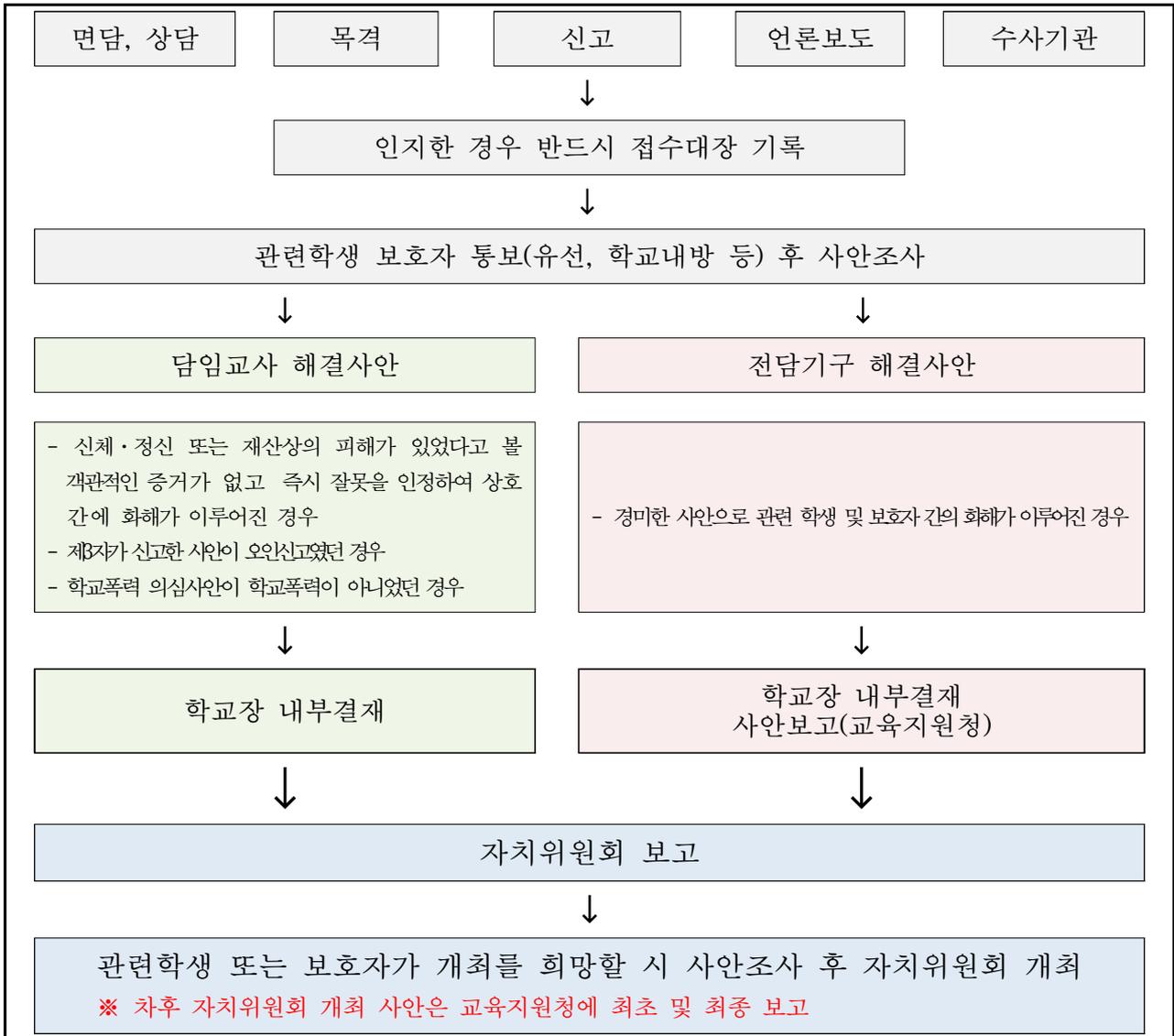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보호, 분쟁의 조정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가·피해 학생 학부모 요청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한다.

※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전담기구)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6.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절차

가.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특수학생일 경우 원활한 의견 진술을 위한 조력자 반드시 지원

나. **학교폭력사안 보고 철저 : 사안 발생 시 서면보고**

- 최초 보고 : 발생 시(피·가해 학생 및 사안내용)
- 종결 보고 : 종결 후(피·가해 학생처리 내용 및 결과)

· **최초 보고된 사안은 담임해결 및 학교폭력 아님 등으로 처리되었다라도 반드시 종결 보고**

다. 학교폭력 사안 보고 절차 : 각급 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III.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우선 보호 및 선도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지원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개의 조치를 같이 적용 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 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 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전학권고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위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의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치료를 위한 요양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우선 보호조치 사안처리 계획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적용기준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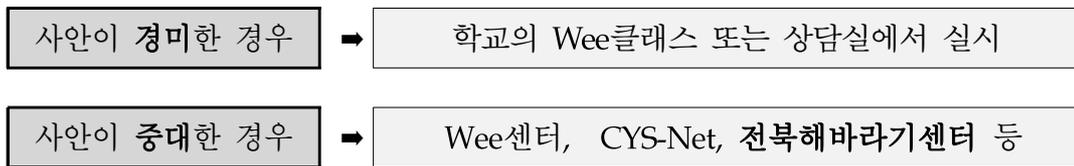
□ 우선 보호조치

-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보호
- 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 모든 업무에 우선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심리상담, 일시보호, 가해자 격리 등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은 일정기간 경찰에 피해자 동행 보호 실시 및 가해학생 감독 요청

◦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 전문기관 연계 :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
-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기관 : 상담·심리치료 및 연계비 지원
- 출석일수 산입, 성적 평가 등의 불이익 금지, 교육상 필요한 조치 마련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특성에 대한 의견 청취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치료비 우선 지원시스템 마련

-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하여 환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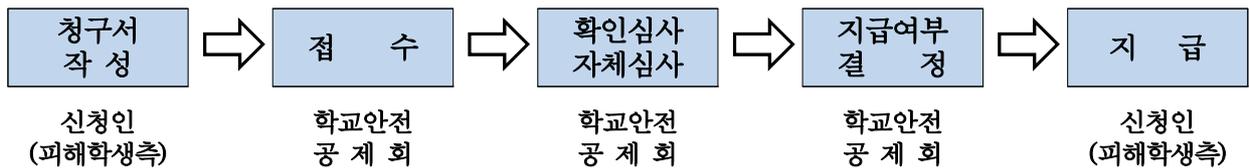
-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해학생에게 구상하여 환수

□ 지원 범위

구분	지원범위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의료기관(병원)의 심리상담 비용 및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의 심리상담 비용	2년 (1년 이내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의 치료비용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 교육감 지정 전문심리상담기관 운영 방침

- 심리상담 지원기관의 범위가 병원(소아정신과 등)에 한정되어 있어 상담지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음
- 2017년 3월 중, 효과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병원 급에 준하는 상담기관을 공모·선정하여 학교에 안내할 계획임
- 지원 절차



◦ 학교폭력 피해 및 위험 학생 신변보호 요청

- 학교폭력 위협 및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이 학교에 신변보호 요청
-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 KT텔레캅에 요청 - 등하갓길 신변 보호
(고객센터 : 1588-0112, FAX : 02) 3281-0432)
- 긴급 위급한 사안일 경우 112에 신변보호 의뢰

2. 가해학생 우선 선도 조치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여러 개의 조치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 포함)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헐박의 금지 |
| 3) 학급 교체 또는 전학 | 4)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우선 선도 조치 사안처리 계획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적용기준

-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 우선 조치 종류(5호, 6호 조치는 병과 가능)

-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 유의사항

- 우선 조치를 할 경우 자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출석정지 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함)
- 우선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에는 선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명확한 기간이 제시되어야 함
 - 2017. 3. 2. ~ 2017. 3. 21.(○)
 - 2017. 3. 2. ~ 졸업(전학) 시 까지(×)
- 학교장 선 조치를 받은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가해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적용기준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우선 출석정지 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3) 학교는 출석정지 기간 중에도 해당 학생을 학교에 나오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가정학습, 자율학습 등의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다만, 가정학습의 경우 : 부모의 동의 및 학교의 확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는 해당학생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4) 출석정지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졸업, 전학 시까지 출석정지와 같은 불명확한 기간 불가
- 명확한 기간 반드시 명시 : 2017. 3. 2. ~ 2017. 3. 12.

◦ 가해학생 전학 조치

-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학교

-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함

□ 교육지원청

- 배정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 정원 외(3%)로 배정하여야 함

<배정원칙>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군 또는 행정구역,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할 학교를 동일 지역 및 계열에 한정하여 배정하여야 함
- 관할 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은 원적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음
-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해당학교는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되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학교재량 조치 가능)

◦ 내실 있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기관 운영

-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2017년 3월 특별교육기관 운영계획 송부 예정)

- Wee클래스 및 Wee센터 최우선 활용
-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개 시·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주시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YWCA, 대안교육 위탁시설 등

◦ 가해학생의 회복 프로그램 운영

- Wee센터, 위탁기관,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민간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을 위한 회복 중심 생활교육 지원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분쟁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 6) 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나)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7) 분쟁조정 개시

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라)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위원 또는 지역위원회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8) 분쟁조정 기거 · 중지 및 종료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거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거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 기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 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을 거거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9)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를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10) 조정의 결과

가)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초기 대응

신고접수 대장기록

- 접수된 사안은 반드시 대장에 기록

학교장 보고

- 접수대장 학교장 결재 (보고한 것으로 같음)

해당학교 및 보호자 통보

-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학교에 반드시 통보

전담기구 소집 교육청 보고

-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초기 개입

해당학생 안전조치

- 보건실, 병원치료 등 필요조치 즉시 이행

보호자 연락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안내용 통보

피해학생 우선 보호조치

- 학교장 요청(동의 필요) 및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1호, 2호, 6호 조치

가해학생 우선 선도조치

- 학교장의 판단 하에 1호, 2호, 3호, 5호, 6호 조치 가해학생학에게 반드시 통지

사안 조사

전담기구 소집

- 교감, 보건(상담)교사 책임교사 등

학교폭력 사안조사

- 피·가해사실 즉시 조사
- 관련학생으로 지칭
- 방과 후 보호자 등의

조사결과 보고 (교장, 자치위원회)

-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 보고

지속적 상담 및 관찰 진행

-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관찰을 기록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소집

-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에 개최 (7일 이내 연기 가능)

피·가해학생측 의견 진술

-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장애학생 (특수교육전문가 참여)

피·가해학생 조치 심의, 의결

- 조치 결정 시 위원이 아닌 자는 퇴실
- 우선조치 추진
- 가해학생 조치 별 세부 기준 고시 안 준용

결정된 조치 학교장에게 집행 요청

-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결정한 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직접 집행 및 통보 불가)

조치 집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 7일 이내 집행
- 피해학생 동의 필요
- 성적 등 불이익 금지
- 출석일수 산입 (진단서, 소견서 필요)

가해학생 선도조치

- 14일 이내 집행
- 가해학생 동의 불필요
- 가해학생 수업권 보장
- 접촉금지: 기간 명시
- 교내봉사: 시간단위로
- 전학: 자발적 전학 불가

보호자 특별교육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조치 생활 기록부에 반드시 기재
- 기재관리방법 (교육부 훈령 제29호)

조치 불복

피해학생 재심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도청)
- 가해학생 처분을 올려 달라고 요청
- 처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 날로부터 10이내 제기하여야 함

가해학생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

- 가해(비행)학생 전학, 퇴학 재심: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안 날로부터 10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
 - 재심 청구 시, 전(퇴)학 조치는 자동유보 (유보기간 동안 학교장은 특별교육 등의 재량 조치 가능)
- 가해학생 1호~9호 조치: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가해학생 조치가 유보(정지)됨 (유보, 정지기간 동안 학교장은 특별교육 등의 재량 조치 가능)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

I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및 위촉

-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 ※ 반드시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된 학부모를 위촉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부모 학급대표 회의에서 학부모를 선출할 수 있음
 - 학교에서는 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함
 - 학부모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를 위촉한 경우: 자치위원회 결정 무효

II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

-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함
- 배정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함
 - ※ 반드시 배정된 학교로만 전학을 보내야 함(주소지 이전 등의 자발적 전학 불가)
- 전학 조치와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를 모두 이수한 후 배정된 학교에 전학을 보내야 함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은 원적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음

III

피(가)해학생의 재심(행정심판, 소송) 청구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유보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 재심기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가해학생 의사에 따라 조치 유보 결정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전학, 퇴학)

- 재심기관: 학생정계조정위원회
- 재심청구 시 조치 자동 유보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 교육(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민사)소송: 법원
- 해당기관의 집행정지 결정 혹은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만 유보

※ 가해학생 조치가 유보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기타 제량 조치 가능

IV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이 아닌 심리치료 조치를 받았을 때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함
- 가해학생이 심리치료 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이 발생되지 않음
 - 가해학생이 5호 조치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2~4호, 6~8호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을 부과할 수 없음
- 심리치료는 정신과적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기관에서만 가능함
 -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기관(6개 기관)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씩 심리상담센터

디딤돌 행복연구소

울구나우 심리상담센터

마음 편한 상담심리연구소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면담, 상담

목적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사안 인지



-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 기록(접수된 사안은 반드시 대장에 기록)
- 해당학교 및 신고자, 보호자에게 통보(공문, 문자 등)
 - 해당학생 병원 이송, 수사기관 신고 및 증거자료 확보
 - 초기 피해정도 및 치료기관 정보 보호자에게 즉시 안내
- 학교장 재량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우선 조치 실시(피·가해가 명확한 경우: 우선조치 가능)**
-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집 후 관련학생 조사 등



< 피해학생 우선 보호조치 >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보호
-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 우선 선도 조치 >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피·가해학생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안
 - 수사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2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학교 및 자치위원회 역할 논의, 수사진행 사항, 관련학생 조치 방안 등을 논의
 - 자치위원회 결정은 수사기관 조사 종결 후로 연기 _ ‘조치 유보’로 결정
 - 수사기관 조사 종결 후 자치위원회를 재개최하여 관련학생 조치
 -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종결 보고를 하여야 함